

현장실습운영위원회규정

제정 2015.07.01

개정 2017.06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현장실습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
2.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업체 발굴 등의 사업의 추진·변경에 관한 사항
3. 학교 내 현장실습과 관련된 부서와의 업무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현장실습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장은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 된다.

②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현장실습운영위원은 취업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전문위원 및 자문위원)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정의 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.

제7조(관계부서의 협조) 위원회는 관계부서와 스쿨(원)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유지) 위원, 전문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기타) 본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